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9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유동수·강선우·김태선

박 정·강준현·이강일

이정문 · 최민희 · 임광현

김교흥 • 문대림 • 윤준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운용 기간"을 "운용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시기・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u>운용</u>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기간 등) ① ----------<u>기간</u>산업안정기금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 (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 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다)-----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신 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 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 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 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 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 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 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

	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u>수 있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
	기・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